

청주지방법원 2020. 6. 19 선고 2018가단3009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

담당변호사 유재풍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범

담당변호사 권오주

변론 종결 2020. 5. 8

판결 선고 2020. 6. 19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18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

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D(이하 망인이라 한다)는 2017. 7. 9. 사망하였는데, 형제자매인 E, F, G, H과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.

나. 망인은 2017. 6. 7.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매계약(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17. 7. 7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)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I, 채권최고액 294,480,000원의 근저당권(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)이 설정되어 있었다.

라.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임차보증금 25,000,000원, 월세 105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었는데,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피고가 승계하게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증여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상속지분의 1/2상당인 1/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을제1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

즉, 망인은 피고의 아버지인 도과 사이에 1억 원 가량의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던 점,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의 부담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점, 망인은 피고의 부모인 H, K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오다가 2016년경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갑제13호증,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지영

별지